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2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 강선우 · 김한규 · 서미화

이재관・김 윤・정을호

송옥주 · 김교흥 · 조승래

김윤덕 • 전진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필요함.

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6조(교육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(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대한영양사협회
 - 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
 - ③ 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

신청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전문교육기관"이라 한다)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전문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·내용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

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
4.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영양사 및 조리사 전문교육기관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56조(교육)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(조 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자·실시기관·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. 개 정 안

제56조(교육 등)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(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 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 체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 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 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22조 에 따른 대한영양사협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식

 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

 받아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

 중앙회
- ③ 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전문교육기관"이라한다)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⑤ 전문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위생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

<신 설>

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자·내용 및 방법, 제2항에 따 른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.

제56조의2(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 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- 4.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

리를 한 경우